



# 보도자료

보도일시	<b>2009. 4. 27(월) 18:00</b>		
배포일시	2009. 4.27(월), 10:00	담당부서	국고국 국고과
담당과장	백 용 천 (2150-5110)	담당자	김 춘 규 사무관 (2150-5113)

## 제목 :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·중소 업체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계약법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) 시행령 개정안을 4.28일 입법예고할 예정임

개정안 주요내용

①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\* 확대 시행

\* 해당 시·도에 소재한 업체를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 공동수급체(컨소시엄)를 구성한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

○ 현재 76억원 미만의 일반공사(턴키·대안입찰 제외)에 대해서만 30% 범위내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가 시행중이나,

○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마련

※ 향후 조치 예정사항

- 대상사업 :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한정(기획재정부장관 고시)

-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대상 및 비율 확대(회계예규, 조달청 기준)

· 적용대상 : 금액에 상관 없이 전체공사(턴키·대안입찰 포함)

· 지역업체비율 : 일반공사 40%\* 이상, 턴키·대안 20% 이상

\* 40% 초과 매 2%p 증가할 때마다 1점씩 가점 부여(최대 5점)

②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지원 확대

-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'우수조달 공동브랜드(상표)'를 지정하고,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

③ 대금지급 기한 단축

- 정부계약시 재정 조기집행 및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금지급 기한을 지급청구일로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

□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(안)은 입법예고(09.4.28~5.17),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중 공포할 예정임

붙임 : 주요 개정 내용 및 개정 이유

기획재정부 대변인

## 1 4대강 사업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

### □ 개정 내용 및 이유

-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에 참여토록 의무화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
  - 적용대상공사를 76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에서 전체 일반공사 및 턴키(설계·시공 일괄입찰) 공사 및 대안입찰까지 확대
  -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일반공사의 경우 30%에서 최소 40%<sup>1)</sup>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, 40%에서 50%까지는 매 2%p 증가시마다 1점씩 가점을 부여(회계 예규 및 조달청 기준 개정)
  - 턴키 공사는 대형공사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 참여비율을 20%<sup>2)</sup> 이상 적용(회계예규 개정)
- <sup>1)</sup> 지역업체의 시공능력, 공동수급체(컨소시엄) 원활한 운영 등을 감안하여 40%로 설정
- <sup>2)</sup> 턴키공사는 대형공사이며, 설계비 부담 등의 문제로 참여가능한 지역업체가 일반공사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20%로 설정
-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
  - “지역업체”를 “입찰공고일 이전 90일 이상 소재 업체”로 제한하여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행위 방지(회계예규 개정)

### □ 기대효과

-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
- 지역업체가 원·하도급을 포함하여 50%이상 수주할 것으로 예상

## <참고1> 국가계약시 지역업체 지원제도 현황

□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, 지역의무공동도급, 지역 가점 등의 제도를 운영중

구 분	제도개요	적용대상	관련법령
지역제한	해당 광역지자체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 가 50→76억원 미만</li> <li>· 지자체 70→100억원 미만</li> <li>· 공기업 50→150억원 미만</li> <li>* 09.3.5 대상 확대 시행</li> </ul>	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
지역의무공동도급	해당 광역지자체에 소재한 업체를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 가 76억원 미만</li> <li>· 지자체 229억원 미만</li> <li>· 공기업 229억원 미만</li> <li>* 지역업체 참여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·공기업 : 30%</li> <li>- 지자체 : 40%</li> </ul> </li> </ul>	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
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	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입찰심사 취득점수의 일정 비율 가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역제한·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공사에 대해 적용</li> <li>* 조달청 적용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계약 : 참여비율 30% 이상시 8% 가산</li> <li>- 지자체계약 : 참여비율 40% 이상시 8% 가산</li> </ul> </li> </ul>	발주기관 자율결정

**<참고2>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 제도(조달청 적용사례)**

**□ PQ(pre-qualification :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) 대상 공사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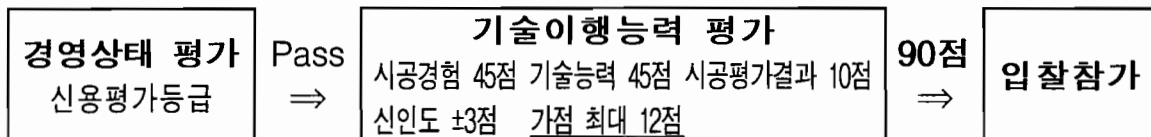
- 300억원\* 이상 최저가계약, 턴키·대안공사 입찰시 사전 심사를 통해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 참가자격 부여

\* 교량, 공항 등 18개 공종은 200억원 이상에 대해서도 적용

- 기술이행능력 평가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취득점수의 일정 비율을 가산

\* 지역업체 시공참여에 대한 가점(조달청 발주 국가계약의 경우, '09. 3월 개정)

- 참여비율 25~30% : 가점 6%    · 참여비율 30~35% : 가점 8%
- 참여비율 35~40% : 가점 10%    · 참여비율 40%~ : 가점 12%



**□ 적격심사 대상 공사**

- 300억원 미만 공사는 최저가 입찰부터 심사하여 가격점수와 계약 이행능력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

- 계약이행능력\* 평가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일부 항목 취득점수의 일정비율(6~12%)을 가산

\* 100~300억원 공사는 입찰가격 30점, 계약이행능력 70점, 낙찰에 필요한 최소점수 92점

- 시공경험·기술능력·시공평가결과·경영상태 40점, 가점 최대 4.8점
- 신인도 ±1.2점, 자재인력 16점, 하도급 14점

### <참고3>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초치 사항

#### □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 개정(09. 3. 5 시행)

##### ①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조정

\* 국가기관 50→76억원, 지자체 70→100억원, 공기업 50→150억원

##### ②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시에도 중복 제한(중소기업+지역) 허용

#### □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회계예규 개정(09. 4. 8 시행)

##### ① 건설업계 구조조정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여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PQ심사 및 적격심사 기준 완화

- PQ심사 : 공동수급체 대표자 등의 기준 완화(BBB- → BB+ 이상)

- 적격심사 : 경영상태 만점기준 완화(AAA → A+ 이상)

##### ②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도입

- 기존에는 종합건설업자만이 공동수급체(컨소시엄)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나,

- 전문건설업자 등이 하도급자가 아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

#####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선금 지급 허용

-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부도,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구성원 각자에게 선금을 지급

##### ④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 자격기준 강화

- (현행)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해당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

- (개선) 입찰공고일 전 90일이상 해당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

## 2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지원 확대

### □ 개정 내용 및 이유

- 현재 중기청에서 '공동브랜드' 상표개발비 및 홍보비를 매칭펀드 (Matching-fund)\*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,
  - \* 비용의 70%를 정부가 지원(5천만원 한도)하고, 나머지는 기업에서 부담
  - \* 공동브랜드 현황 :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개발·활용(38개 조합, 52개 상표)
    - (해외) 일본의 월(Will), 미국의 선키스트(Sunkist), 뉴질랜드의 제스프리(Zespri) 등
    - (우리나라) 블루웍스(CCTV조합), 아리랑(엘리베이터조합), 가보로(목재가구)
- 대부분 초기시장 개척에 실패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입 초기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정부구매를 통한 지원방안 필요
- 5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개발한 공동브랜드 중 품질이 우수하고 육성 필요가 있는 브랜드를 조달청장이 '우수조달 공동브랜드'로 지정
  - '우수조달 공동브랜드'의 물품에 대해서는 한시적(3년,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)으로 수의계약을 허용
  - 대상은 WTO 정부조달협정(GPA :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)에 위배되지 않도록 2억원 미만 물품구매에 한정

### □ 기대효과

- 공동브랜드 활용을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제고
- 공동브랜드 참여업체간 경험과 정보 공유
  - 기술개발 촉진, 품질향상 도모, 비용절감 유도
- 공동브랜드를 통한 계약이행 담보 및 신뢰 확보로 그 동안 조달시장 참여가 곤란하던 영세 소기업 제품의 판매기회 확대 예상

#### <참고4> 공동브랜드 지원현황 및 매출액 현황

#####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지원 현황(중소기업청)

(단위 : 개)

구 분	지원 업체수								
	96~01	02	03	04	05	06	07	08	계
활용상표	4	4	4	7	18	4	6	8	55
중단상표	19	2	2	1	-	-	-	-	24
계	23	6	6	8	18	4	6	8	79
지원금액(억원)	1.8	3	10	15	15	15	15	12	

##### 공동브랜드 매출액 현황

상표등록 연도	조합명	상표명	참여 업체수	매 출 액(억원)		
				07	08	09(계획)
1993	위생지	아리랑	9	228	484	600
1997	화장품	유틸리티	5	255	25	100
2000	싱크	아이비스	28	95,298	92,262	98,000
2002	시계	SECRO	5	63	57	50
2004	한국승강기	반디엘리베이터	7	1,113	1,333	2,500
2005	도자기	라이아트	5	6,808	5,995	6,230
2006	인천경기가구	라인아트 등	25	2,542	-	2,000
2007	무인경비업	케이폴	7	5,491	6,371	6,750
2008	한복	겨비	5	-	265	410

### 3 대금지급 기한 단축

#### □ 개정 내용 및 이유

- 국가가 발주한 공사 또는 구입한 물품 등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을  
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
- 대부분의 기관이 3~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

#### □ 기대효과

- 정부의 대금지급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중소기업체 자금 유동성을  
지원하고 재정조기집행 효과를 제고